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2391
-----------	------

2025년 3월 5일
교육 위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3일, 이희원 의원
2.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3. 상정일자 :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5년 3월 5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희원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청,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의 역점 산업 유형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 등의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사업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이희원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391호로 발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를 비롯해 교육청 등 민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취업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중등직업교육은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유연하고 심화된 교육 및 취업과 후학습 기회를 폭넓게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동향에 따라 지역 기업과 지역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기반의 체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교육부는 협약형특성화고 육성사업¹⁾ 및 ‘RISE²⁾(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와 연계하여 지자체-교육청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발전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하 ‘혁신지구’)’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혁신지구는 전국적으로 광역 8지구, 기초 5지구 총 1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은 2024년 혁신지구로 선정되어 3년간 총 4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표-3] 서울시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 현황’ 과 같이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2024년에 분야별(교통, 인공지능, 콘텐츠 등)로 총 6개 학교가 참여하였고, 2025년에는 신규 6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12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표-1] 전국 직업교육 혁신지구 현황(13개 지구)

구분	혁신지구
광역(8지구)	서울(2024),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북, 전북
기초(5지구)	진주·사천·고성, 창원, 김해, 천안, 당진

[표-2]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소요예산

구분	교육부특교	서울시청(대응)	서울시교육청(대응)	총예산	비고
1차년도('24년)	10억	-	-	10억	
2차년도('25년)	7.5억	3.75억	3.75억	15억	우리교육청 대응 25%
3차년도('26년)	7.5억	3.75억	3.75억	15억	
합계	25억	7.5억	7.5억	40억	

1) 협약형특성화고: 고졸 인력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목표로 2024년 처음 시행된 교육부 공모-선정 사업
 - 서울시교육청 선정 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철도 분야)

2)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

[표-3] 서울시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 현황

구분	학교명	비고
교통	용산철도고(철도), 한양공업고(자동차)	2교
인공지능	미림마이스터고	1교
콘텐츠	서울디지털고(게임),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웹툰, 게임) 세그루패션디자인고(패션)	3교

- 이와 같은 혁신지구 사업은 ①(협력)지자체-교육청 지역 기반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②(성장)직업계고-기업-대학의 지역인재 성장지원 ③(지속)지역 내 직업교육의 지속 가능 혁신기반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³⁾
 - 사업의 기본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동 사업운영의 주체는 학교,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대학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입니다.
 - 또한 지속가능한 혁신지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행·제정적 지원을 위한 기반 또한 마련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은 혁신지구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혁신지구 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3) '2024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공모 계획' 내용 중.

- 동 조례안은 총 7개의 개별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사업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동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실제적 내용에 따라 적절히 순서를 정하고 관련 지침⁴⁾ 등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바, 형식적 측면에서 구성 체계상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의(안 제2조)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지역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학교 중 서울특별시,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2호)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지역적 관할의 범위 내에서 미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⁵⁾

그런데도 ‘지역대학’의 범위를 경기, 인천을 포함하여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은 보다 많은 대학과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결과를 보더라도 서울뿐 아니라 타지역 소재 여러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 법제처, 2021.12

5)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8페이지: 자치법규의 공간적 효력

[표-4] 2024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동행 매력 프로젝트' 참여기관

산업분야	교통, 인공지능, 콘텐츠(게임, 패션, 웹툰)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지자체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 용산구청
직업계고	용산철도고, 한양공고, 미림마이스터고, 서울디지털고, 서울웹툰애니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기업	코레일, (주)로지시스, 서큘러스, 스마일게이트, 패션앤컴퍼니, 3B2S
대학	송원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 중앙대, 한양대, 한성대, 백석예대
유관기관	한국철도산업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능률협회, 한국ICT패션뷰티산업협회, 서초구청

[표-5] 2024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분야별 협력대학

산업분야		협력대학
교통	철도	송원대학교
	자동차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신한대학교, 오산대학교
인공지능	인공지능	중앙대학교, 멜버른폴리테크닉
콘텐츠	게임	한양대학교, 한성대학교
	패션	한성대학교, 서일대학교, 명지대학교
	웹툰, 애니	서울백석예술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 따라서, 제2조제2호 ‘지역대학’ 을 서울특별시, 경기, 인천에 소재 하는 학교로 정의한 것은 많은 대학과 협력적 관계 정립을 통해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하는 고졸 인재 성장 경로 구축’ 이라는 정책목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본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3)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는 서울시교육감에게 혁신지구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청 및 기초자치단체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1항)

또한 학교장에게는 지역 산업 유형에 맞춘 직업계고 분야 확대 및 산업체 등 기업의 발굴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2항)

-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공동으로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인 ‘동행매력 프로젝트’ 를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6]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소요예산

구분	교육부특교	서울시청(대응)	서울시교육청(대응)	총예산	비고
1차년도('24년)	10억	-	-	10억	
2차년도('25년)	7.5억	3.75억	3.75억	15억	우리교육청 대응 25%
3차년도('26년)	7.5억	3.75억	3.75억	15억	

- 또한 혁신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은 서울에서 1개교(철도 분야: 용산철도고등학교)가 선정되었고, 동 사업을 위해 교육부는 2024년 20억의 예산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표-7] 협약형 특성화고 연도별 재정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기관	총액	지원예산(안)			
		2024	2025	2026	2027
계	5,040	2,160	960	960	960
교육부(특교)(69.4%)	3,500	2,000	500	500	500
우리청(13.9%)	700	100	200	200	200
광역지자체(11.9%)	600		200	200	200
기초지자체(4.8%)	240	60	60	60	60

※ 교육부 특교 20억원(구축비) + 연간 5억원(운영비)

- 이와 같이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주체들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타 사업(협약형특성화고 육성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안 제3조는 지역을 기반으로 협력체계가 중요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서 각 주체들의 책무들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4)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및 활성화 사업(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는 혁신지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안 제1항),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기본방향(안 제2항제1호)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2호), 그리고 혁신지구 및 협약형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혁신지구 사업운영을 위해 협력위원회 개설과 혁신지구 지원센터 운영, 홍보 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및 창업 등 지원 사업 등 활성화 사업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4년도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동행매력 프로젝트’ 를 추진하였습니다.⁶⁾

2024년 기준 ‘동행매력 프로젝트 운영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서

6) 동행매력 프로젝트: 교육청, 시청, 직업계고, 기업, 대학이 하나가 되어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후 지역사회 정주를 위해 함께 동행하여 매력적인 서울직업교육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울시의 미래 중심 첨단 전략산업과 직업계고 및 유관기관의 역량을 고려해 3개 역점분야(교통, 인공지능, 콘텐츠)를 선정하여 교육과정, 취업·창업, 선취업후진학, 지역정주 등의 과제별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주요사항 심의·의결 및 자문 등을 위한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위원회’를 개설하고,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⁷⁾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8]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위원회

구분	소속	직위	비고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 선택위원 - 대학, 기업, 유관기관 등 협의를 통해 12~15인으로 구성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서울시청 평생교육국		
위원	진로직업교육과장, 참여학교장(6인)	과장, 교장	

○ 따라서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현재 기시행 중인 혁신지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안 제6조는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혁신지구 사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민관학 각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협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해당 정책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2024.6월 구축):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성동공고)에 위치

따라서 안 제6조는 협력체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림-1] 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체계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9, 2025.2.13.).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청, 기초자치단체(구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간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창업, 선취업후진학, 지역정주를 지원함으로써 서울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이란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 산업의 한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학교 중 서울특별시,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4. “협약형특성화고”란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협약형특성화고로 선정된 특성화고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협약형특성화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서울특별시청 및 협약형특성화고 소재의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협약형특성화고에 참여하는 학교장은 지역 산업 유형에 맞추어 직업계고 분야를 확대하고, 산업체, 지역대학과 참여 기업의 발굴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기본 방향
2.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협약형특성화고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매년 실시한다.

1. 자문, 협의 등을 위한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위원회’ 개설
2. 사업 운영을 위한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의 운영
3.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창업, 선취업후진학, 지역정주를 지원하는

사업

4.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청, 기초자치단체(구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